

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

(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7호, 발령일 : 2025. 12. 17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원장"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.
2. "부서장"이란 연구지원과장, 대응기술연구과장, 화재예방연구과장, 안전정책연구과장,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.
3. "담당급"이란 각 과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.
4. "공무직 등"이란 「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5. "중요사항"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.
6. "일반사항"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.
7. "경미사항"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.

제4조(전결사항)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

- ② 위임·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

야 한다.

제5조(전결권자의 책임)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6조(협의사항) 위임·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전결권자의 부재) 전결권자가 결원,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「직무대리규정」 및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처리한다.

제8조(보고)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위임 · 전결사항

위임·전결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"[첨부파일](#)" 버튼을 이용하십시오.